#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25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26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)

### 가. 개정이유

❍ 선정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강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❍ 선정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2항)

❍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기능 중 강소기업등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17조제4의2호)

### 다. 관계법령

❍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❍ 본 조례안은 선정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강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검토결과,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유망 강소기업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, 재지정 절차, 기준, 기간 등의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❍ 그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## 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